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세무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원회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추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최대 인원수에 이르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기존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 ①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	<삭제>

현행	개정안
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삭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삭제>

현행	개정안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위원장이 정한다.</u>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u>시장·군수·구청장 및 위원회는</u>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1. (생략) <u>11의2.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u>에 관한 사무 12. ~ 15. (생략) ② (생략)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2.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0000